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32144- 2/1	(전화: 731-6311)	시 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9. 5. 24		
보조 기 관	산업경제국장 전 결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문 서 통 계
	상공과장 홍근		
	동성새장		
기안책임자	(이명기)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 신 명 의	국 장
제 목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 지정		
제 1 안			
수신 :	내 부 결 세		
제목 :	갈 은 건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1980. 1.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5호)			
○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 자체지정 1989. 3. 30. (산업경제국)			
2. 상 기 관 련 근 거 에 의 기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을 회계과에 봉보			

하고 시보에 게재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가. 회계직 공무원 지정 내용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명령관 : 산업경제국장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공무원 : 상공과장

첨부 : 1. 공고(안) 1부.

2. 회계직 공무원 직인 인명부 1부.

제 2 안

수신 : 재무국장

참조 : 회 계 과 장

제목 : 같 은 건

1. 우리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1989. 1. 25 서울특별시 조례 1395호)에 의거 장학금을 운용함에 있어 산업경제국 자체적으로 회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였으니 직인등록 대장에 등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직 공무원 지정 내용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명령관 : 산업경제국장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공무원 : 상공과장

78

첨부 : 1) 공고(안) 1부.

2. 회계직 공무원 직인 인명부 1부.

제 3 안

수신 : 공 보 관

제목 : 시보게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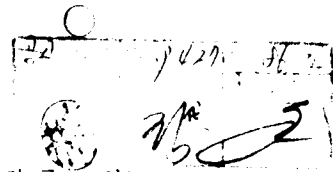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지급조례 (1980. 1.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5호)에 의거 우리시 공고 제 38/호를 송부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첨부 : 서울시 공고 제 38/호 2부. 끝.

79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공무원 지정 공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1/ 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1980. 1.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5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다 음

- 회계직 공무원 지정 내용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명령관 : 산업경제국장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공무원 : 상공과장

서울특별시장

서 인 등 록 조 시

의 개 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서울시 조례 1395호 80.1.24)

관 시 명 (청 소) : 산 업 경 제 국

식 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영 관

식 명 개 시 일 : 1989.

인 명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1989년 4월 2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

서 인 공 목 호 서

이름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주소명 (주소) : 산업경제국 상공의

이름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출납공판

발행처 : 1989

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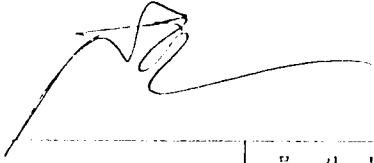
•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1989년 5월 4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

10-8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32144-	(전화: 731-6312)	시행성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산 업 경 제 국 장		
순진척 보존기간				
기행일기				
보 조 기 관	상공과장	취 조 기 관	문 서 통 제	
	상장계장			
	공장계장			
기안책임자	이명기	발 송 일		
경 유 수 진 급 조	내 부 결 재	발 신 일 의		
세 목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착공무원 지청			
<p style="text-align: center;">1.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우리시에서 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에 장학금을 예치 운영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신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 현 행</p> <p style="text-align: center;">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 (장학금 지급)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장학기금 관리 및 회계)에 의거 장학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 보관에 관한 책임은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을뿐 장학금 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무회계 규칙의 제시식을 존용 한다고 되어 있는 실정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나. 장학기금, 수입, 지출과 현금 보관에 관한 제반사항이 공정계장</p>				

사인으로 되어 있어 공석 및 인사 이동시 업무상 공백으로 장학금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

되어 사인으로 기금 인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 개선안

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에 외계직공무원이 미지정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자체적으로 외계직 공무원을 지정 근로

청소년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계직 공무원 지정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명령관 : 산업경제국장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공무원 : 상공과장 " 끝 "